

제주지방법원 2022. 7. 5 선고 2021가단6280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제주지방법원 2023. 5. 1 선고 2022나13742 판결

제주지방법원 2022. 7. 5 선고 2021가단62807 판결

전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수인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정언

피 고 B

변론종결 2022. 5. 31.

판결선고 2022. 7. 5.

주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 취지

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

2021. 3. 9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C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‘C은 원고에게 25,757,3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’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, 위 지급명령은 2018. 7. 19.

확정되었다(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154632, 이하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‘이 사건 채권’이라고 한다).

나. C의 어머니 D은 2021. 3. 9.경 사망하였는데, 상속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한다)이,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, C, E, F, G가 있었다.

다. D의 상속인들은 2021. 6.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취득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(이하 ‘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’라 한다)를 하였고, 피고는 제주지방법원 등기와 2021. 6. 3. 접수 제51080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‘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’라 한다)를 마쳤다.

라.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3, 4, 5호증, 을 제1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, H기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C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
3. 판단

가. 관련 법리

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,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(민법 제1008조의2 제1항),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.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(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). 한편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,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된다(민법 제1008조의2 제1, 2항 참조).

나. 구체적인 판단

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을 제1 내지 4호증, 제7 내지 11호증(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, ① 피고가 D의 자녀 중 셋째이자 장남으로서 D을 부양해왔고 D이 치매 진단을 받은 후 간병을 도맡아 한 것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, ② D은 배우자 I가 사망함에 따라 1991. 11. 15.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상속하였고,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J조합의 가압류, 주식회사 K의 근저당권등이 설정되었다가 말소되었는데 D과 자녀들의 각 연령, 직업, 소득,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각 금융기관 채무의 변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, ③ C 외 나머지 상속인들 모두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포기하고 상속재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바, 피고의 기여분을 고려한 취지가 아니라면 C 외 다른

상속인들까지도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기여분으로 인정하는 상속인들의 협의를 전제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.

그렇다면 C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한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C의 상속분에 상당한지 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, C의 재산이 감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사해행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희진